

씨드모아 통장 상품설명서 [이벤트]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 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 지 않습니다.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씨드모아 통장

■ 상품특징 : 전북은행 첫거래 고객을 위한 파킹형 입출금통장 상품

2 거래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전북은행 첫거래 고객 ¹⁾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1) 첫거래 고객 : 가입일 당일 당행 최초 신규 등록고객 또는 가입일 직전 1개월 동안 당행 원화 입출금통장 보유이력(거래중지계좌 포함, 시효완성계좌 제외)이 없는 고객
상품유형	· 저축예금
거래방법	・신규 : 모바일뱅킹, 모바일Web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매월 제 4 금요일에 셈하여 그 다음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이 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기본이자율 ('25. 05. 09. 기준, 세전)	• 연 2.20% ※ 기본이자율은 시장금리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시점의 이율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우대이자율 (*25. 04. 01. 기준, 세전)	「신규가입 우대금리 이벤트」 • 우대이율 : 최고 연 0.71% • 우대조건 : 이벤트 기간(25. 4. 1 ~ 25. 6. 30) 내 가입한 경우 아래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0.71% 우대이율을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				
		이벤트 우대이자율 제공조건	우대이율		
	① 이 예금 신규 시 다음 마케팅활용 동의한 고객 (다만,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함)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② 매일	의 최종 잔액이 3억원이상일 경우 추가우대	0.41%		
	ex) 25. 4. 2 가입시 25. 7. 1 까지 제공				
	「Welcome Back 우대금리 이벤트」 ・ 우대이율: 연 0.40% ・ 우대조건: 기존 씨드모아통장을 거래하는 고객 중 당행에서 선정한 고객 ¹⁾ 이 이벤트 기간(25. 4. 1 ~ 25. 6. 30) 내 '우대금리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한 경우 연 0.4% 우대이율을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 1) 당행 선정 고객은 메시지, Push, 배너 등을 통해 개별 안내				
이자 산출근거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에 게시한 이율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셈한 이자 지급 • 산식: 매일 최종잔액 × 예금이율 × 1 ÷ 365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업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1인당 "5천		
세제혜택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양도 및 질권설정 불가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우대서비스	• 이 예금은 가입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우대서비스 제공 1.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2. 당행 CD/ATM 영업시간 외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3.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다만, 은행외부에 설치된 타행 제휴기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기기 제외) • 우대서비스 제공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함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단,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해지는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 중 신규 후 거래가 없으며 잔액이 0원인 계좌에 한함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3 유의사항

- 이 예금은 공동명의,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및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의 최초 신규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며, 한도제한계좌 해제신청은 영업점,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었을때는 **변동되는 날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상품은 전북은행 디지털고객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4477) 또는 인터 넷 홈페이지(www.jbbank.co.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